

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[별표 6]

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 산정을 위한 계급별 조정비율
(제37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관련)

계급	중위	소위	준위	원사	상사	중사	하사	병
조정 비율	96/100	93/100	100/100	99/100	98/100	86/100	83/100	75/100

비고 :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하사에 대해서는 병(兵)에 대한 조정비율을 적용한다.